

의안번호	제136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26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‘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’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 : 다문화·탈북, 학교 부적응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
- 사업대상 :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습중인 학업중단 학생
- 위탁범위 : 초·중·고 학업중단 학생 전일제 위탁교육 전반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9개월(2019. 4월~2019. 12월)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 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사업비 : 54,000천원(자체예산 19,000천원, 교육비특별회계 35,000%)
* 연도별 변동
- 위탁주요사무
 - 학업중단 학생의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학업중단 인성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 개발 적용
 - 화재 예방, 급식 시설, 기숙사 등 시설 보수·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

3. 참고사항

○ 위탁현황

- 2018. 4. ~ 2018. 12. /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 시설 2기관 선정
- 2019. 4. ~ 2019. 12. /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 시설 3기관 선정(예정)

○ 관계법령

-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및 제9조

○ 관련공문

-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-4101(2018. 9. 17)

○ 붙임

- 2019.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(안) 1부

**2019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
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[안]**

2019.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(안)

<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>

I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*을 예방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며, 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
-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,
 - 여전히 약 12,000명의 학령기 청소년이 정규학교 외의 학교 밖 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,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
- 다문화·탈북, 학교 부적응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 지원 추진

□ 추진 경과

-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」 수립('13.8월, 여가부 합동) 및 「특별교부금 지원 계획」 수립·시행('14~)

II 추진 계획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정규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여건 개선

- (지원 대상) 다문화·탈북, 학교 부적응, 저소득층, 장애 등 **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**이 학습 중에 있는 **전일제 교육시설**
 - ※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이 아닌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
- (지원 규모)
 - **충북: 3개 내외 기관(평균 18,000천원 내외 지원)**
 - ※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시설 수 조정 및 예산 차등 지원 가능
- (사업기간) ‘19. 4. ~ ’ 19. 12.
- (지원 내용)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기자재·교재(도서)구입비, 체험 및 교육 안전시설 확충 비용 등 **교육활동 경비**
 - (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용)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, 인성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외부 강사비 등
 - (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용)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학습 목적의 기자재 구입 및 노후 기자재 교체, 교재(도서) 구입 등
 - (안전시설 확충비용) 화재 예방시설, 급식시설, 기숙사 등 시설 보수·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비용
 - ※ 장학복지, 시설 내 직원 인건비, 시설 운영비·홍보비 등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부문으로 예산집행 불가

□ 지원대상 시설 선정 절차

- (선정주체) 충청북도교육청
- (선정방법)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하여 선정
 - (심사위원회 구성)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및 유관 분야 현장 전문가로 구성(3명 내외)

- (평가 및 선정) 충청북도교육청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평가, 현장평가 등 자체 평가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시설 선정
- (선정기준) ①교육과정, ②학생 구성, ③시설 운영현황 항목을 필수로 고려하되, 항목별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진행

<충청북도교육청 심사 기준>

평가항목	비중*(%)	주요 평가내용
교육과정	30	교육과정과 학습자 특성 간 부합도, 학습자 성장가능성, 교육과정 구성·운영의 적합성 및 합목적성, 공공성, 창의성 등
학생구성	40	시설 내 학습자 수, 다문화·탈북·학교부적응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 학습자 비율 등
시설운영	30	학생 부담금(입학금+수업료) 수준, 교습자 중 무급 자원봉사자 및 자격교원 참여 비율 등
합계	100	

- (선정제외 대상) 교육의 중립성 위반, 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
<재정지원 제외 기준>

- 교육기본법 제6조(교육의 중립성)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
- 사교육, 입시교육,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
-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교 시설
- 학생들로부터 입학금, 수업료 등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시설
-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

III

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성과관리

□ [도교육청] 집행점검 및 성과관리

- 사업비 적정집행을 위한 집행점검 실시
 - 시·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적정 집행 확인 목적의 **중간점검** 실시
 - 교육시설의 **목적 외 예산 집행 적발 시, 사업비 회수 조치**
- 집행내역 정산 및 성과관리
 - 사업 기간 종료 후 집행내역 정산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보고
 - ※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
 - 도교육청 자체 **성과평가위원회 운영** 등을 통해 성과평가 후 차년도 교육시설 지원 선정·지원 계획 수립 시 반영

IV

향후 추진 일정

- 사업비 집행 및 집행실태 점검 : ‘19. 5. - ’ 19. 11.
- 성과관리 및 결산보고 : ‘19. 12.